



## 1.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충청북도 주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에서 2013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선 추진할 현안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굴하였다.

### 가. 일자리 분야

#### 1) 관리직의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리직의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 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성별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시되었다. 충청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반면에 관리직의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는 12.3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 1위 지역의 성평등지수와 27.9점이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승진 등의 성과관리 체계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와 같은 충청북도의 특징을 감안하여 여성의 고용 창출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업무 관련 보수 교육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성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 승진 등 고용안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가운데 직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2013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우선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부서에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우선 홍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에서 남녀 임금 격차 지표에 대한 충청북도의 성평등 지수는 58.4점으로 관리직의 성비 지표와 함께 전국 평균보다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 및 12개 시·군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

로자나 업체를 통한 용역 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이 동일할 시에 성별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 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인하여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우선 홍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

### 3) 조·중·고 교장의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2010년을 기준으로 충청북도 교감 및 교장의 여성 비율이 2005년과 비교하여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여성 교사 가운데 30.0%도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직종보다 종사자의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교육계의 직위에 대한 심각한 성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직자 연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비롯하여 승진 등 성과관리 체계가 한쪽 성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충청북도 공무원 성별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여성 공무원은 27.4%로 남성 공무원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1.0%이며, 5급 이상 관리직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4.6%로 전국 평균인 6.3%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증가율(11.1%)이 남성 공무원의 증가율(0.8%)보다 월등히 높아 행정 조직 내에서의 여성 대표성 문제가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10.0점, 동 영역 1위 지역보다는 26.9점이나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승진 등 성과관리 체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5) 육아휴직 사용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에서 육아휴직 사용 성비 지표에 대한 충청북도의 성평등지수는 16.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8.0점, 동 영역 1위 지역보다는 17.0점

이나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전체 사용자 가운데 여성은 98.0%, 남성은 2.0%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심각하다.<sup>79)</sup> 이러한 현상은 육아는 여성의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에 의한 것으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30년대부터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성 할당제’ 도입 등 적극적인 일·가족 양립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남성의 90.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양육을 위해 퇴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다.<sup>80)</sup> 충청북도 성평등 수준의 제고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등 남성이 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휴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보건 분야

충청북도의 사망자 관련 통계에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45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망자 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 성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45세에서 49세 사이의 남성은 악성 신생물, 폐암, 호흡기계 질환 순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순환기계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이상에서 살펴본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49세 사이의 남성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사망률이 높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검진 의무 항목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질병에 대한 여성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연령별 건강 검진 의무 항목 결정이 중앙행정기관의 고유한 업무로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작성 시에 해당 사

79) 충청북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에 대한 통계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 전국 통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80) 남성 할당제는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는 부모휴가 중에서 일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포르투칼,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에 도입되어 있다. 여성신문 2013.09.11 기사 <남성 육아휴직 90%... 젠더보너스 도입 ‘눈길’>.

향을 개선안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예산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해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된다.

#### 다. 사회복지 분야

##### 1) 임대 주택 관련 정책 및 사업

2010년 충청북도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26.9%로 전국의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며, 1인 가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0%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30년 만에 5배 증가한 1인 가구의 추이와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둔다면,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및 사업에 있어 1인 가구를 주요한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0.1%로 4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인 8.4%보다 월등히 높으며, 1인 가구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76.6%로 OECD 국가 평균인 30.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1인 가구의 빈곤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대와 30대의 1인 가구 가운데 월세에 사는 비율이 49.3%로 절반에 가까워 임대 주택 공급 등의 주택 관련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는 사실과 충청북도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20대와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 2) 도우미 파견 등 돌봄 관련 정책 및 사업

돌봄 관련 일자리에 대부분이 여성인 이유는 돌봄 영역을 여성의 몫으로 배분하는 성별 분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생계책임자로 인식되고 있는 남성을 견인 할 만큼 매력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서부터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일에 대한 저평가는 도우미 등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안심하고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이 향상될 때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도우미 등 돌봄 영역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은 돌봄의 질 향상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

위 제고 및 도래하는 고령화 시대의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도우미 파견 등 돌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남성의 비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보수의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 등 당사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계획적으로 처우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및 사업이 개선되어야 한다.

###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

2010년 충청북도의 여성 한부모 가구는 전체 한부모 가구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나 저소득 한부모 가구 가운데 여성 한부모 가구가 76.1%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정책 및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48.7%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성 한부모 가구는 남성 한부모 가구보다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 내용에 의하면,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필요한 지원 내용이 성별로 구분되어 파악되지 않아 해당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자에 대한 성별 요구도 조사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라. 노인 관련 분야

##### 1) 노후준비자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충청북도는 60세 이상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자 성비 지표에 대한 성평등지수는 ‘복지’ 영역 1위 지역과 19.6점이라는 큰 차이를 보여 성별에 따라 노후 준비 정도에서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특성 및 요구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0년 노후 생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젊은 세대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자식 세대의 도움을 바랄 수는 없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비율이

63.0%에 이른다는 조사까지 고려한다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여성의 노인 인구 비율과 50.6%라는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염두에 두고 노인의 복지와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0대를 대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충청북도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2013)에서 2012년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노년 준비 실태 진단 결과를 보면, 평균인 2.36점에 못 미치는 항목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을 통한 노년생활의 즐김’(2.31점), ‘종교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활동’(2.29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인 준비 이외에도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2) 노인의 자살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충청북도의 노령화 지수는 76.6%로 전국 평균인 63.9%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 세대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다. 충청북도는 2009년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노인 자살 사망률이 117.2%로 충청남도(124.4%)에 이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2013)에서 2012년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노화불안 수준 진단 결과를 보면, 노화에 대한 불안 수준은 2.92점으로 중간 정도의 불안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1)</sup> 하위 항목별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3.22점)이 불안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심리적 불안정(2.89점), 외모에 대한 걱정(2.83점), 노인에 대한 두려움(2.72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2013)이 지난 5년 간 우울증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70대 여성의 4,178명으로 가장 많이 우울증을 앓았다. 그 다음은 60대 여성(3,217명), 80세 이상 여성(2,990명) 순이었다. 빈곤 및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65세 이상

81) 5점 만점 중에서 2.5점 미만일 경우에는 노화 불안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3.5점을 초과하면 노화 불안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복지체계를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안전 분야

충청북도는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비 차표의 성평등지수가 동 영역 1위 지역과 19.4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사회안전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우선 선정하는 것이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여성의 53.4%, 남성의 36.0%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유괴·납치, 절도, 강도, 성희롱·성폭력 순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기 피해, 절도, 강도 순이었다. 약간 보행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여성의 53.7%와 남성의 30.4%가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서’(63.8%), ‘가로등이 없어서’(37.4%)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이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입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활용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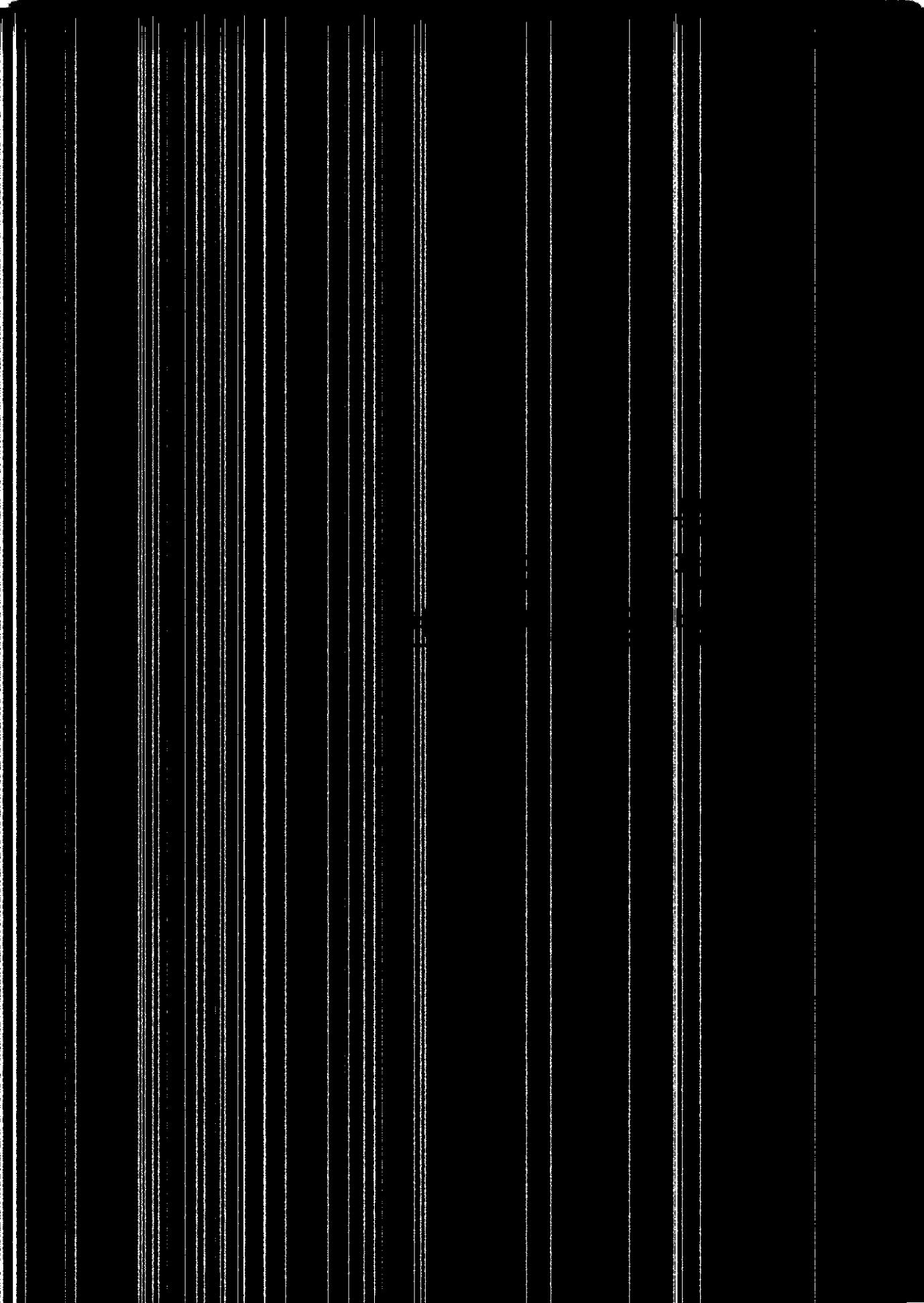
## 2.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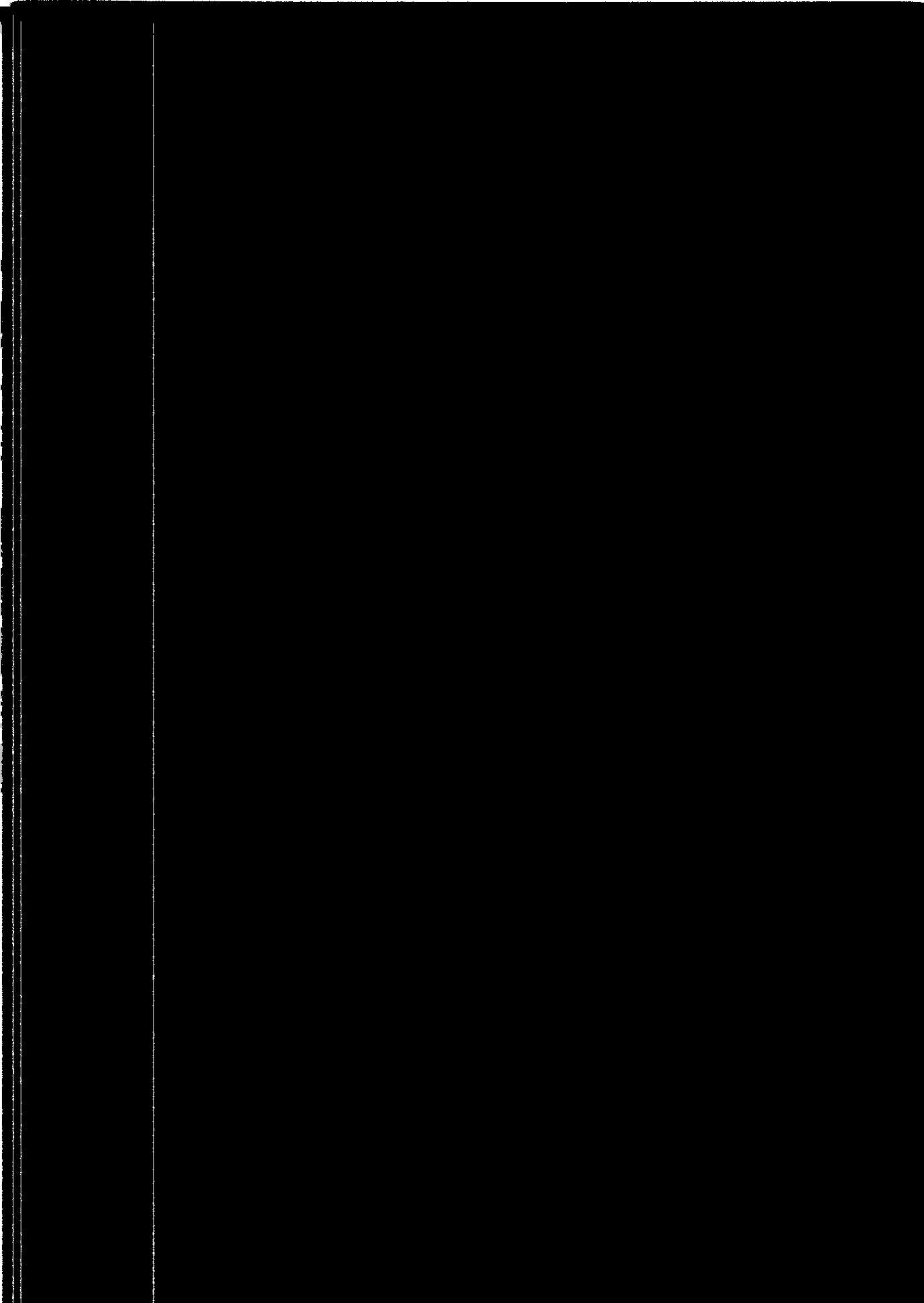
충청북도의 주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에서 2013년에 실시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 비중이 낮은 정책 및 사업
  -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기술 협력, 지역 기상업무 등
  - 국방 분야 : 병무행정지원, 병역지원선발 등
  - 통신 분야 : 우정사업 행정지원, IT 인재 육성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 비중이 높은 정책 및 사업
  - 농림해양수산 분야

## 90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 사회복지 분야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이 용이한 정책 및 사업
    - 일자리 관련 분야
    - 교육 분야
    - 시설 개선 및 설치 관련 분야
  - 예산 규모
    - 광역자치단체 : 1억 원 이상 규모
    - 기초자치단체 : 5천만 원 이상 규모
  - 사업 기간
    - (최소) 2015년까지 지속 사업
    -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2014년 사업도 가능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정책 및 사업을 현안과제로 발굴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적용 대상의 확대, 추진 및 지원 체계의 강화,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개선의 의무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행정 조직 내에서 성평등 실현이라는 성 주류화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일부 사업분야에 한정되어 분석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과제 선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양산하지 않도록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는 성별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원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분야별 성평등지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최근 경향, 2013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현황, 2012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성인지 통계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제시되는 기사를 검토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자리, 보건, 사회복지, 노인 관련, 안전 분야에서 총 12개의 사업을 현안과제로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이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계획되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개선을 통해 성평등 실현이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안과제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현안과제를 제안하는 3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성별 특성을 요약하고 충청북도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본 다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안과제 분야 및 사업과 관련된 것을 골라내어 <표 IV-1>에 수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성별영향분석 평가 현안과제 발굴의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성별에 따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 성별분리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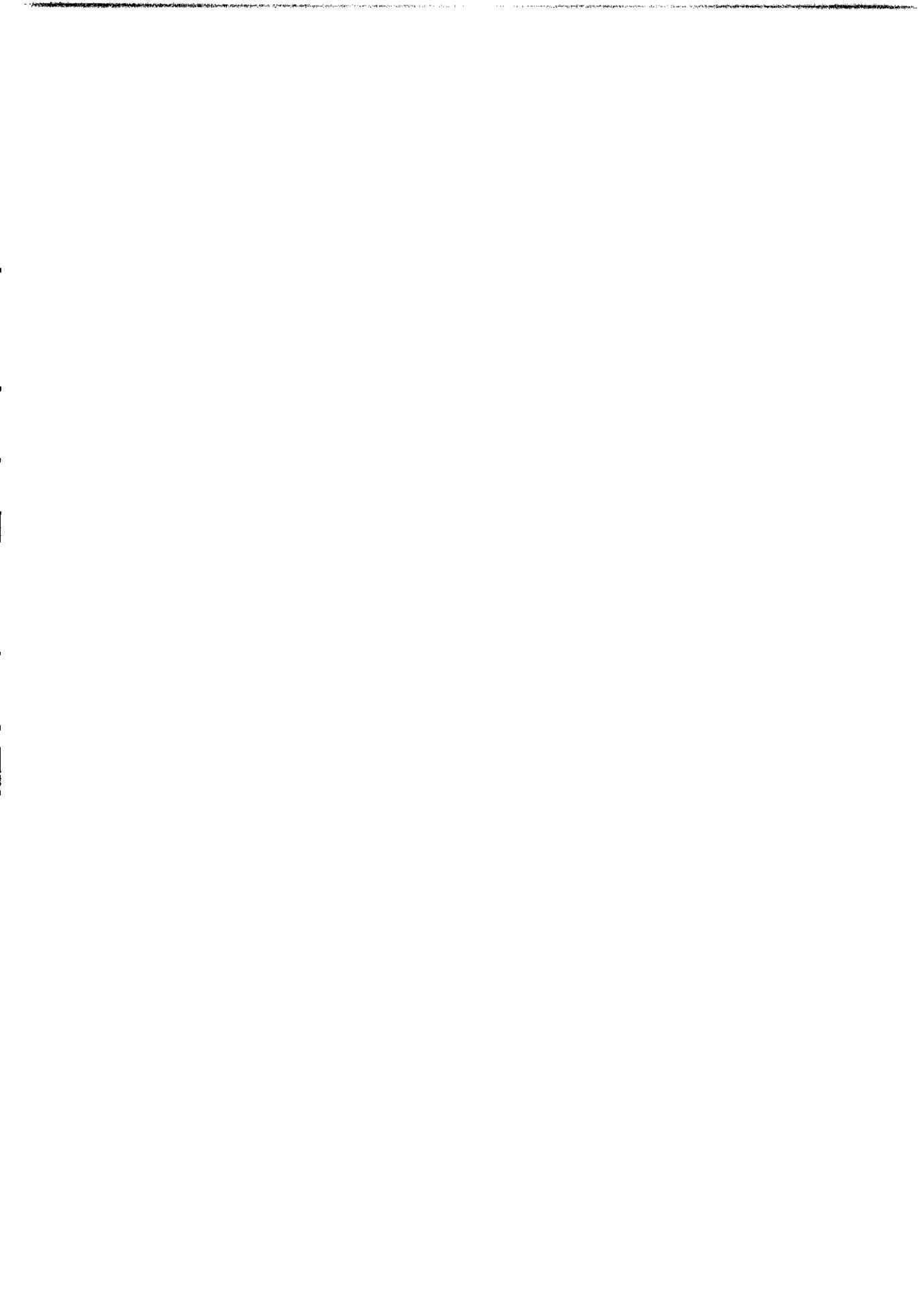
계가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충청북도의 성별분리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여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좀 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까지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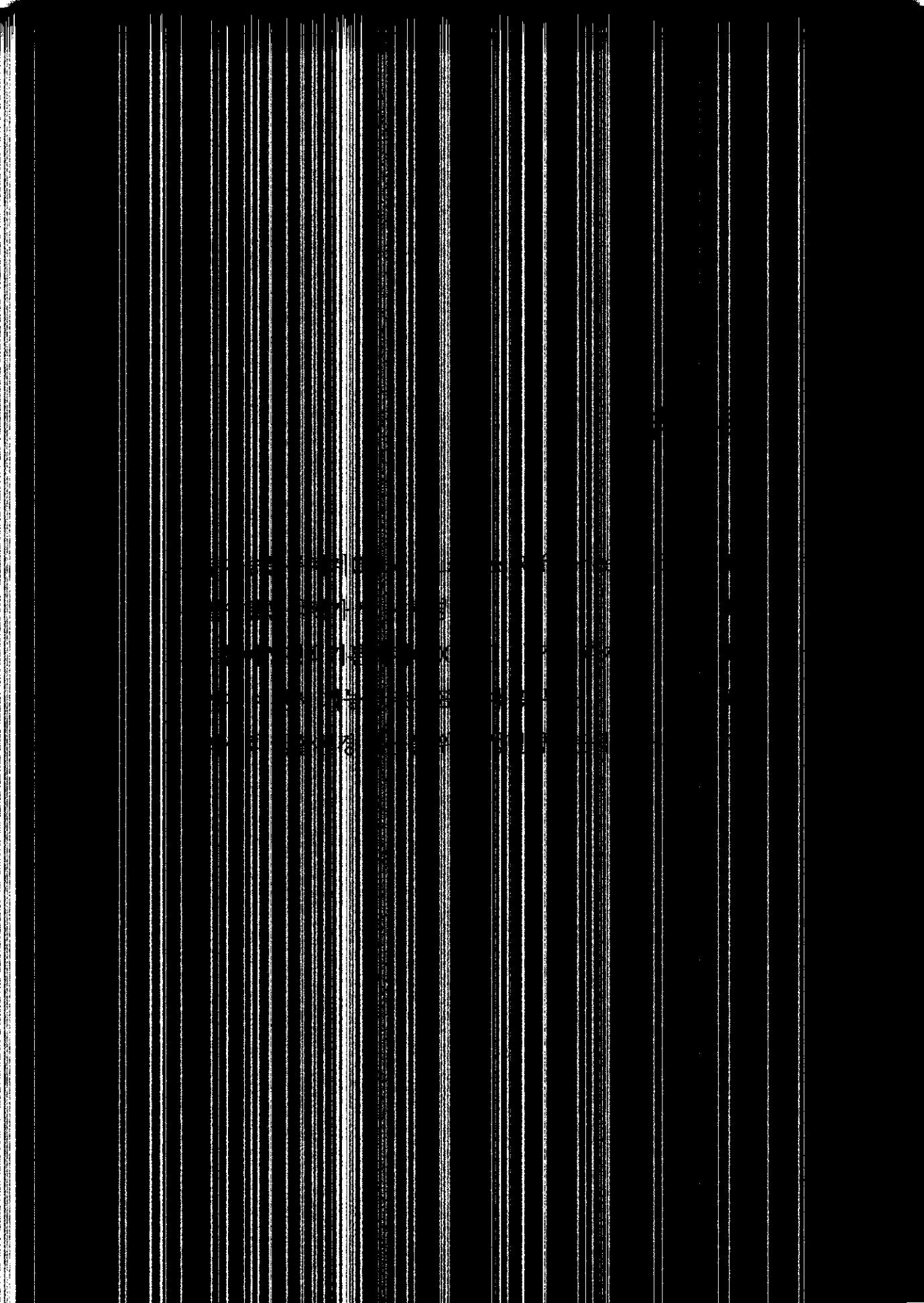
〈표 IV-1〉 현안과제별 충청북도 사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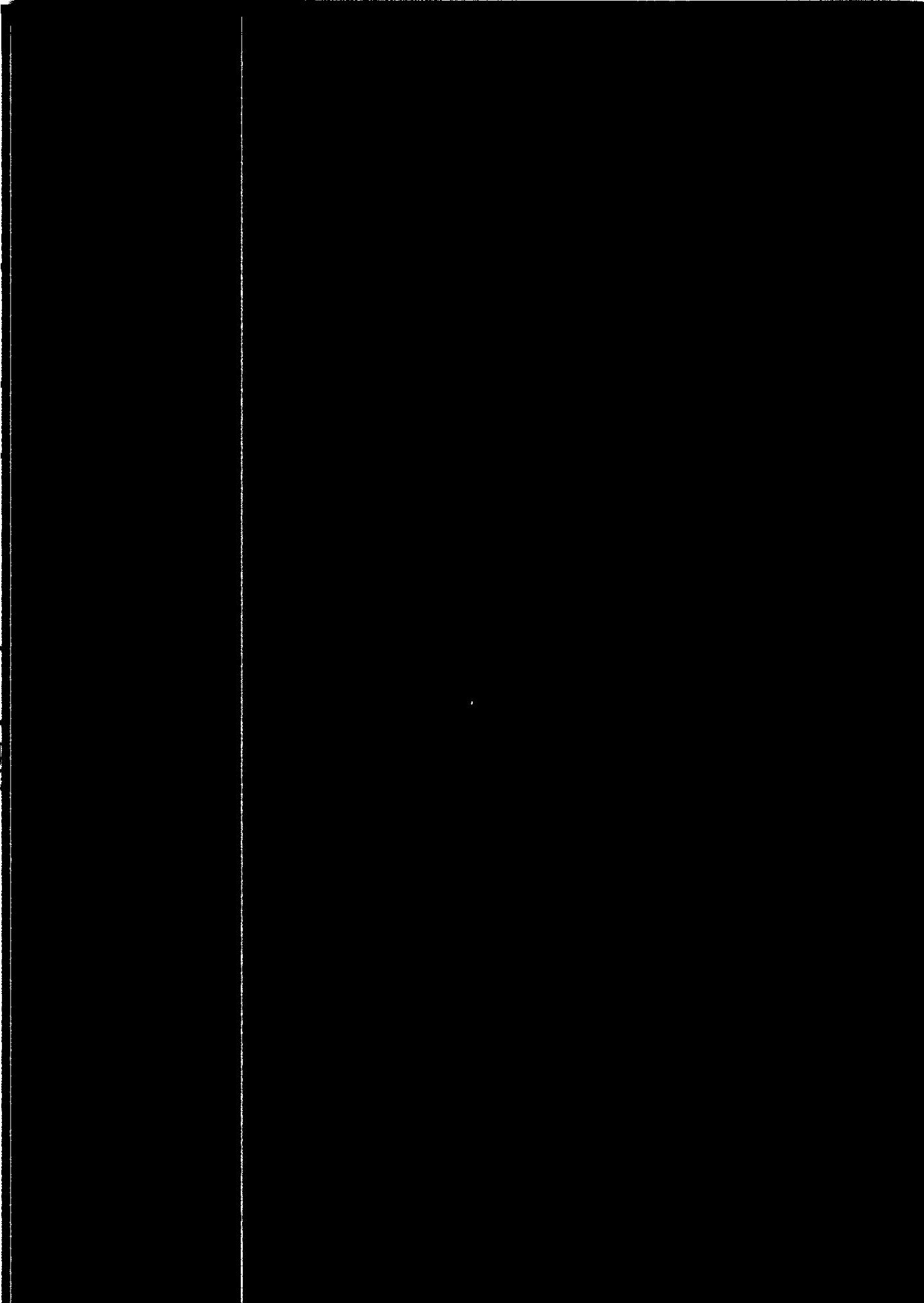
분야	제안 사업	충청북도 추진 사업	담당부서
일자리	관리직의 성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산담당관실
		정보격차해소사업	정보화담당관실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운영	기업유치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미래산업과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산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무과
		청소용역	회계과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성과지표 개발 워크숍	창조전략담당관실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POOL)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	총무과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행	
		도·시·군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자치행정과
		공무원 교육	자치연수원
		장기교육과정운영	
	육아휴직 사용 성비	대체인력뱅크 운영	총무과
	초·중·고 교장 성비	※ 교육청 사업으로 충청북도 추진 사업 아님	
보건	성별 및 연령별 건강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총무과
		공중보건의료 기반구축	보건정책과

IV.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활용 방안 ... 95

분야	제안 사업	충청북도 추진 사업	담당부서
사회복지	검진 의무 항목 등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 사업	
		암조기 검진 및 암센터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임대 주택 관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 사업	경제정책과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복지정책과
	도우미 파견 등 돌봄 관련	사회복지사 지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복지통합콜센터 및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연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정책과
	한부모 가구 관련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정책관실
노인	노후준비자 성비	노인일자리운영	노인장애인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동지원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조성	체육진흥과
	노인의 자살 방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지원	보건정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등	어린이안전CCTV설치	정보화담당관실
		CCTV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공공디자인 사업	건축문화과
		주거문화 조성	
		도시계획정보체계확산사업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교통사고 찾은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 부록 1.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

(2009.06.17 기준)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경찰	
		과학수사	
		검찰활동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법무교육훈련	
		법무시설 확충	
		법무활동	
		보호활동	
		출입국관리	
	재난방재 · 민방위	복구지원 관리	
		복권기금 운영(재해재난긴급구호)	
		소방대응 관리	
		소방방재 행정지원	
		안전정책	
		재난상황 관리	
		재난안전교육 관리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	
		재난예방 관리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해경	
		장비관리	
		정비창 운영	
		해상경비	
		해상안전	
		해상치안	
		해양경찰 행정지원	
		과학기술 기반조성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기술 협력	
		과학문화 창달	

102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정책분야 교육	정책영역 과학기술 일반	출연연구기관 지원
		과학기술 종합조정
		과학기술 혁신평가
		국가 과학기술 자문
		국립중앙과학관 운영
		기상 행정지원
		기상관측
		기상연구
		기상예보
		기후변화대응
정책분야 기술개발	정책영역 기술개발	연구개발 조정
		지역기상업무
		기초연구진흥
		미래원천기술개발
		우주기술개발
정책분야 고등교육	정책영역 고등교육	원자력 안전
		원자력 진흥
		국립대학 운영지원
		대학(원)교육 연구역량 강화
		대학생 복지지원 확대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식정보화 지원
		학술연구역량 강화
		교육인전자원 행정지원
		e-러닝의 활성화
정책분야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정책영역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교육복지 확충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재정 지원
		한국사연구·사료편찬
		국제교육 진흥
정책분야 과학기술 연구지원	정책영역 과학기술 연구지원	국제교육 협력증진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국방	병무행정	인적자원정책기반 강화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체계 구축
		동원소집
		병무 행정지원
		병역자원선발
		병역자원충원
		사회복무
		경영안정 · 농업금융
		과수산업 육성
		국제농업 통상협력
농림해양수산	농업 · 농촌	기술개발 · 정책연구
		농림행정지원
		농산물유통
		농산물품질관리
		농어민금융 지원
		농업 · 농촌 정보화
		농업 · 농촌기술지원
		농업경영 · 기술정보화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기술연구 · 개발
		농업생산기반조성관리
		농업연수
		농업인력양성교육
		농지관리
		농촌개발 · 복지증진
		농촌진흥 행정지원
		수의과학검역
		식물검역
		쌀 소득보전
		양곡생산유통
		양곡수급관리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종자관리 지역농업육성 축산업진흥 친환경 농업육성
임업·산촌		국유림확대 복권기금 운영(산림환경법정지원) 산림 행정지원 산림경영기반구축 산림과학기술개발 산림생태계보전 산림인력개발 산림자원보호 산림자원육성 산림정보화 산림정책관리 산림휴양·경관조성 산지보전 탄소흡수원체계확립
해양수산·어촌		국제 해양수산 협력 생산소득기반조성 수산경영지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인력 양성 및 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어업구조조정 지방해양항만청 운영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수산연구 해양정책 및 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레저도시 육성 관광정책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문화예술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운영
		문화미디어정책
		문화산업정책
		문화정책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재		예술원 운영
		예술정책
		예술종합학교 운영
		종교문화지원
		궁·능·원 보존관리
		동산·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호
		무형문화재보호
		문화재 조사·연구·복원
		문화재 행정지원
보건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복권기금 운영(문화재보전)
		사적·자연문화재 보존관리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체육	체육정책
보건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운영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사회복지	보건의료	결핵관리
		공공보건의료확충
		구강보건사업 지원
		국립의료원 지원
		국민건강생활 실천
		금연 및 절주사업
		보건사업육성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생명과학연구지원
		소록도병원 지원
		암 및 희귀질환 지원
		응급의료체계운영 지원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
		정신질환 관리
		질병관리본부 운영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식품안전
사회복지	식품의약안전	식품의약안전 행정지원
		안전평가
		의료기기안전
		의약품안전
		지방식약청운영
		국민연금제도 운영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운영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기초생활보장	자활서비스 지원
		고용보험
		고용정책
	노동	고용평등실현
		국제노동협력
		근로자복지증진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노인·청소년	노인·청소년	근로조건보호
		노동행정지원
		노사정책
		산업재해예방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증진
		지방노동행정
		직업능력개발
		노인생활안정
보육·가족 및 여성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의료보장
		노인일자리지원
		장사시설확충
		청소년 성장환경개선
		청소년 정책
		청소년 활동복지
		보건의료
보훈	보훈	질병관리본부 운영
		가족기능 강화
		보육지원 강화
		여성가족 행정지원
		여성권익증진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국립묘지
		보훈관리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일반	지방보훈행정
		보건복지 행정지원
		복권기금 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사회복지기반조성
	주택	주택금융 지원
		주택임대주택정책
		주택정책
	취약계층지원	복권기금 운영(취약계층지원)
		부랑인·의사상자지원
		이동복지 서비스지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국제산업 협력
		무역구제
		무역진흥
		수출입금융 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산업지원 행정지원
		중소기업 정책조정
		중소기업 행정지원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창업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
	산업기술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산업진흥·고도화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산업기술진흥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산업재산권 심사
		산업재산권 심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생활산업진흥
		소상공인지원
		신기술 지식재산 육성
		자본재산업진흥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식생산 창출·활용
		지식자산인력개발
		지식자산행정 종합지원
		지식자산행정정보화
		지역산업균형발전
		창업 및 생산구조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국내외자원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 안전관리
		에너지및자원정책
		원전사업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
		전력산업 경쟁력강화및전력수급안정
수송 및 교통	도로	고속도로건설
		국도및광역도로건설
		국도유지관리
		도로정책
		민자도로건설지원
	도시철도	지자체도로건설지원
		도시철도건설
	물류 등 기타	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
		건설교통 정보화
		건설기술정책

110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정책분야	정책영역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국토해양 인재개발
		국토해양행정지원
		물류산업지원
		물류시설확충
		물류정책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육상및광역교통정책
		자동차관리안전 및 대중교통활성화지원
		지방국토관리청 운영
철도	철도	고속철도건설지원
		일반철도및광역철도건설
		철도안전 및 운영
		철도정책
항공 · 공항	항공 · 공항	인천국제공항건설
		일반공항건설
		항공시설관리
		항공운항기술 및 안전
		항공정책
해운 · 항만	해운 · 항만	신항만개발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항만민자유치 및 기술개발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해양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운영
		국가적중장기과제추진 · 지원
		국무총리실운영
		국정통합보좌
		규제개혁
		복권기금 운영(일반)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정부업무평가
		정책조정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공무원지원
		공정거래
		공정거래행정지원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
		국민권익위 행정지원
		국정홍보기획
		권리구제기반 구축운영
		기록물관리
		물자 및 시설조달
		법제 행정지원
		법제업무 품질제고
		비상기획
		소비자보호
		영상홍보
		원자재 비축 · 관리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위 행정지원
		전자조달운영
		정부의전
		정부혁신
		조달 행정지원
		조달물자공급
		책임운영기관 운영
		청렴증진
		청사관리
		통계행정지원
		해외홍보
		행정심판
일반행정		

112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재정·금융	재정·금융	행정안전 행정지원
		경제정책
		경제정책조정
		경제협력
		공공혁신관리
		공적자금관리
		관세 행정지원
		관세심사
		국고관리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금융위 행정지원
		금융정보분석
		금융정책
		기획 및 재정전략
		밀수감시단속
		세관행정
		수출입통관
		양극화민생대책
		재정경제 행정지원
		재정성과관리
		재정운용
		정보화 및 국제협력
		조세정책
정부자원관리	정부자원관리	공무원 교육운영
		소청심사
		인사정책 및 인적자본관리
		전자정부
		조직혁신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복권기금 운영(지자체법정지원)
		이북5도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자치인력개발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및지원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수자원정책 및 기술개발 용수공급 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지역개발		개발제한구역 국토정보관리 국토정책 도시정책 지역균형발전 토지정책 행복도시건설 행정지원
		우정사업 경영지원 우정사업 행정지원 우체국보험 내실화 우체국예금사업 성장강화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IT 산업 기반조성 IT 신성장 동력육성 IT 인재 육성 IT 산업해외진출지원 SW산업육성 U-Korea기반조성 국가 CITO역할강화 글로벌IT협력 방송정책
통신	정보통신	

114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방송통신위 행정지원 방송통신융합 방송통신이용자권익증진 전파관리고도화 전파방송산업경쟁력강화 전파연구기반조성 정보역기능방지 정보통신전략기획 첨단인프라기반조성 통신서비스고도화
		경제 · 통상 외교 국가외교정보통신 국제기구 대외경제협력 지원 문화 · 총보 외교 여권 외교의전 외교정책 연구 및 교육 외교정책기획 외교통상 행정지원 자유무역협정 재외공관 운영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조약 및 국제법 지역외교 한반도 평화교섭
통일 · 외교		남북경제협력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화담 대북경수로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
	통일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환경보호	대기	북한정보 분석·관리
		인도적 사업
		통일 행정지원
		통일교육
		통일정책
	상하수도·수질	수도권 대기보전
		일반 대기보전 및 생활공해관리
		4대강 유역관리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
	자연	수질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 생활자원보전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해양	해양오염관리
		해양환경 보전
	환경보호일반	환경 행정지원
		환경보전 기반육성

##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시행령

법률	시행령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기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li> <li>“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li> <li>“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li> </ol>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b></p> <p>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p>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p> <p>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p> <p>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p> <p>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p>	<p>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p> <p>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p> <p>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과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p> <p>2. 성별 수혜분석</p> <p>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p> <p>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3조(분석평가의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p>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p>

법률	시행령
<p>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p> <p>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p> <p>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p>
<p>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li> <li>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li> <li>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li> </ol> <p>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과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p>

법률	시행령
<p>④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종합분석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p> <p>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li> <li>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li> <li>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li> </ol> <p>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p>

## 120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법률	시행령
	<p>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li> <li>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li> </ol>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p>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li> <li>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li> </ol> <p>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li> <li>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li> <li>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li> <li>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li> <li>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li> </ol>
<p>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	시행령
<p>부칙(법률 제11046호, 2011.9.1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p>

### 부록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정책과제

I. 여성 인력 활용	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 청년여성층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2.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2.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 과학기술분야 등 여성전문인력 육성 2. 여성 경제인 육성 3. 여성 농어업인 지원 4.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근로자 차별방지	1. 고용상 차별 예방과 시정 2.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 3.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 강화
	4. 여성 일자리 확대	1. 성장동력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4. 여성기업 경영인프라 확충
	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4.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I. 여성 권익 보호	1. 여성의 건강 보호	1. 여성의 건강 보호
	2.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	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2. 한부모가족 지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원 4. 미혼보 지원 5. 여성노인 지원 6.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보호 지원
	3. 여성장애인 권리 증진	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의 향상
	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제도 개선 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2.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1.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 2. 다문화여성 보호체계 구축

## 124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b>III.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b>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성인지 정책의 시행</li><li>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li><li>3. 평등문화 확산</li></ol>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li><li>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li><li>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li></ol>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li><li>2. 시민사회와의 협력</li></ol>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확산</li><li>2. 양성평등 교육 확대</li><li>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li><li>4. 여성 국제협력 확대</li></ol>
---	---	--

## 부록 4. 성인지 예산서 기능별 총괄표 분야 및 부문

분야	부문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	보건의료

126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분야	부문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지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 및 교통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 부록 5.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담당부처
주거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지역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여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높으며 이상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중요한 우선순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안전지역(safe zone) : 마을광장</li> <li>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범죄감소·예방</li> <li>공공 공간에 휴식 공간, 조명 설치</li> <li>운동코스 개발 및 코스 안내 지도 설치</li> </ul>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범죄 등의 증가로 혼자 집에 있을 때 백배 등 낯선 방문객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li> <li>특히 여성 또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안정도가 더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인택배보관함</li> <li>주택가 근접 거리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등) 무인택배보관함</li> <li>필요시 야간조명</li> </ul>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 야외 화장실,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등 이용자의 불안정도가 높으며 특히 여성의 불안정도는 더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급 상황 경적 회전등</li> <li>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내부, 지하도로 비상벨 설치</li> <li>비상벨과 연결된 경적 회전등 및 안내표지판 부착</li> </ul>	시설관리과 토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가시성이 낮아 위험 상황 시 찾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벨 형광기둥</li> <li>비상벨 주변 형광색 도색으로 가시성 확보</li> <li>CCTV 주변 조명 정비 및 안내표지 설치</li> </ul>	시설관리과 주택과
이동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근처 야간 보행 시 여성의 두려움 정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li> <li>야간 보행의 두려움은 여성의 이동기회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밤길안심 귀가서비스</li> <li>안심귀가 전화 개설</li> <li>자율방범대 차량 또는 도보 동행</li> </ul>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 이용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 전문</li> <li>아동동반시 버스 이용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상버스 및 지하철 안전벨트</li> <li>시외버스 탑승장 어린이용 안전의자 대여</li> <li>시내버스 노약자석 4점식 안전벨트 장착</li> <li>지하철 안전띠 설치</li> </ul>	대중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동반 및 유모차 이용자 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편의 앱 개발</li> <li>공공기관 휠체어 및 유모차</li> </ul>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담당부처
	제공 미흡	접근기능 시설, 돌봄 시설 정보 - CCTV 및 비상벨 설치 위치 정보	
	• 승객대기공간인 쉘터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대부분 미설치 - 여성과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쉘터 설치가 가장 필요하나 설치된 경우가 없음	• 안심버스 쉘터 - 천장, 가림막, 조명, 의자 - 정류장 보행로 장애물 제거 - 읍면 지역 휴게소 대용 버스 쉘터 설치	도로관리과 토목과 (도로조명팀)
	• 택시이용 시 여성의 불안정도가 높음 -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불안정도가 높음	농어촌 마을순환버스 - 수요 대응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또는 주요기관 공공순환버스 설치	교통행정과
	• 농촌지역 자가보유율은 낮으나 대중교통수단 확충은 어려움 - 버스 배차간격 및 노선, 훈승에 대한 읍면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 안심택시 - 택시이용자에게 차량번호 및 위치 정보 공개 -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조합 간의 MOU 체결 - 스마트폰 앱 연계된 QR코드 부착	대중교통과
	• 공공기관·시설 이용자 중 미취학 아동 부모,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낮음	• 공공기관 돌봄지원시설 설치 - 신규 건축·리모델링 대상 1,000㎡ 이상 규모의 기관 1층 돌봄지원시설 설치 - 영유아 놀이 공간, 임산부 휴게실 겸 수유실, 다목적 화장실, 유모차 보관 및 대여 시설	보육/돌봄사업 관련부서
돌봄여건개선	•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저조 • 취학 전 자녀 중 어린이집 등에서 퇴원 후 홀로 있는 아동은 19.2%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맞벌이 가구 아동	• 마을풀앗이센터 - 소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공간 : 어울림과 돌봄 공간 - 프로그램 : 동네밥상(나홀로 아동, 지역여성이 함께하는 점심), 작은 토론회 등 다양 * 접근성 높은 지역주민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보육/돌봄사업 관련부서
	• 영유아 보육시설 전체 공급율은 50% 정도이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대부분이 읍·면·동 - 특히 농촌지역은 여성이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이며 농번기에는 일과 양육 부담이 가중	• 농어촌 마을 방문 육아지원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육아 서비스 차량 운행 - 유아놀이교실, 장난감 대여, 부모 교육 등	보육지원과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담당부처
건강여건개선	• 육아기 여성들은 아이와 지속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생활체육의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움	• 육아기 여성 힐링 프로그램 - 공공체육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 근육 활동과 정서적 안정 연계 프로그램, 춤 테라피 -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관리과 주민자치센터
	• 산후 우울감은 산모의 약 85.0%가 겪고 있음 - 일부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상담 서비스까지는 미실시	• 산후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 정신보건센터 또는 지역 비영리법인 정신건강증진 사업 상설화 - 상담 및 예술 또는 움직임 치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간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몸의 변화와 정서적·심리적 변화가 나타남	• 간년기 여성 완경 프로그램 - 평생학습센터(진단 및 교육) 또는 보건소 상설강좌(진단 및 운동 프로그램)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 장애인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도 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간 및 휴일 이용이 어려움	• 장애인 산모 도움방 개설 - 장애인 어울림 센터에 산모 도움방(2~3인용) 설치 및 24시간 도우미 배치 - 산전·후 6개월 동안 미취학 자녀 육아 도우미 - 보건소 방문 예방접종	사회복지과
여가 및 문화 여건개선	•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교용상태 가 많아 여가시간이 많으나 비용 부담으로 77.5%가 TV 시청이 유일한 여가	• 여성장애인 여행바우처 이동 지원 - 여행바우처 사용 시 여행용 차량 및 기사 무상 제공	문화관광과 주민자치센터



연구보고서 2013-4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안과제 발굴**

2013년 9월 29일 인쇄  
2013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_ 유 영 경

발행처\_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360-18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공원로 27(자북동 355-17)

tel. 043-220-6481~3 / fax. 043-220-6479

<http://woman.cb21.net>

발행등록번호\_ 73-6430302-000026-01

ISBN\_ 978-89-98640-02-6

인쇄처\_ 도서출판 수덕인쇄 tel. (043) 266 4627

